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25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7조 및 제28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장ㅇ은 (98.12.29.)	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반환 처분 통지 및 납부 안내	취업성공수당 지급기간에 근속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(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)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 되어 중복지급된 취업성공수당 반환 결정함	취업성공수당 합계 500,000원 반환명령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8. 25. ~ 2026. 9. 8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하윤이(Tel. 051-860-2136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